

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

1. 명칭(업종):
2. 성명(대표자):
3. 주소(주사무소 소재지):
4. 사업장 소재지:

위 사람(법인)을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1조의3제1항 및 「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
직인